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4

발의연월일: 2024. 7. 16.

발 의 자:조인철・박지혜・박해철

오세희 • 정준호 • 박균택

정진욱 • 민형배 • 이개호

송재봉 • 서영석 • 신정훈

이용우 · 위성곤 의원

(14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난폭운전 관련 9가지 금지 행위를 열거하고 그 중 둘 이상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오토바이 폭주족'이 대열을 이루고 도로를 질주하면서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9조 등).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9조제1항 중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 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
- 2.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제150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제151조의2를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9조(벌칙) ① <u>제68조제1항을</u>	제149조(벌칙) ① <u>다음</u> 각 호의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	
<u>·이전하거나 손괴한</u>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1.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
	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
	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
	나 손괴한 사람
<u><신 설></u>	2.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
	거나 주도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50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u><삭 제></u>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	
거나 주도한 사람	
<u><신 설></u>	1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
	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51조의2(벌칙) <u>다음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u> <u>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

 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제151조의2(벌칙)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 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삭 제>